

제10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

1. 회의 개요

□ (일시/장소) '25.2.18.(화) 14:00~16:00 / 농어업위 대회의실

□ (참석자) 13명(특위위원 10명*, 사무국 3명**)

* (특위위원) 강용(위원장), 권민수, 권영석, 김경희, 김수석, 김태용, 박명호, 백주현, 이상우, 윤석곤

** (사무국) 이재식 사무국장, 농어촌정책팀 엄성준 팀장, 김선우 사무관

2. 주요 내용 → 개선(안) 일부 변경 및 자구수정

□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(개선안 일부 변경)

구 분	당 초	변 경
○ 농어업법인 설립지원 (양도소득세 이월과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이월과세 적용)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월과세를 동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→ 추후 실제 매각시 양도세 납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이월과세 적용) ①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, ②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 적용 ③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* 3가지 안으로 변경 적용
○ 농어업법인 운영지원 (법인세 면제 확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기타작물재배업·작물재배업 외 소득) 전액면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기타작물재배업·작물재배업 외 소득) 감면확대 및 면제
○ 농어업법인 운영지원 (임직원 농업인 인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년 미만 농업법인에서 근무한 임원도 농업인으로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업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도 농업인으로 인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업법인 임직원으로 근무하여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외소득 적용 범위에서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농업경영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외소득 적용 범위에서 제외

3. 향후 계획

□ 제11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개최 준비('25. 5월초)